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2.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8월 22일, 이기현의원 등 18인

나. 회부일자: 2024년 8월 2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 11. 1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025. 01. 16) 상정, 축조심사,
의결(원안가결)

제421회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 01. 21)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
토론,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기현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관할 지자체에선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음.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 또한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함.

그런데 지자체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에만 통보하도록 규정하면서, 대규모 인파 관리에 대한 사전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현재도 큰 공연이 개최되는 경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관할 경찰서에 통보하는 경우가 있지만, 경찰서 통보가 지자체 의무사항은 아님.

이에 지자체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뿐만 아니라 관할 경찰서에까지 통보하도록 해 공연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연예술 창·제작 및 향유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개정안은 공연장운영자가 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였을 때,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관할 소방서장만이 아니라 관할 경찰서장에게도 통보하도록 통보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재해예방조치)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u>관할 소방서장</u>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재해예방조치) ① ----- ----- ----- ----- ----- -----, ----- ----- ----- <u>관할 소방서장과 관할 경찰서장</u> -----.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9조¹⁾에 따르면 등록된 공연장의 운영자는 공연장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공연장으로 등록되지 않은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공연을 하려는 자와 해당 장소의 운영자도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재해대처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 1) 「공연법」 11조(재해예방조치)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는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및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⑥ 그 밖에 공연장의 재해예방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연법 시행령」 제9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2.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연장운영자(이하 “공연장운영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적용하기 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장운영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연장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연장 등록 신청과 함께 해당 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③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안전관리인력의 확보·배치계획 및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동 규정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는 공연장 시설 등 관리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 비상시 조치 및 연락처,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 안전관리비·안전관리조직·안전교육 관련 사항, 피난 안내에 관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

[재해대처계획 포함 사항]

구분	공연장(객석 수)		공연장 외 공연 (1천명 이상 관람객)
	500석 미만	500석 이상	
공연장 시설등 관리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	○	○	○
비상시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	○	○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	○	○	○
안전관리비 계상 (공연법 제11조의2)	×	○	○
안전관리조직 구성 (공연법 제11조의3)	×	○	○
안전교육 관련 사항 (공연법 제11조의4)*	△*	○	○
피난안내 (공연법 제11조의5)	○	○	○
안전관리인력의 확보·배치계획	×	×	○
공연계획서	×	×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연장 운영자 또는 공연 개최자로부터 재해대처계획을 신고받으면, 이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이는 공연이 개최될 때 관할 소방서가 공연의 개최 규모 및 안전관리계획을 사전에 파악하여 화재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공연 현장에서의 대응을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임.

그러나 최근 한정된 공연 또는 행사 장소에 관람객이 수용인원 이상으로 과도하게 밀집하면서 각종 안전 사고가 발생²⁾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화재뿐만 아니라 공연장 인파 밀집에 대응하기 위한 질서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 경우 관할 소방서뿐 아니라 관할 경찰서에서 지원 인력이 출동하여 현장 질서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뿐만 아니라 관할 경찰서장에게도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관할 경찰서에서도 공연의 규모, 예상 관람객 인원 및 안전관리계획 등 관련 정보를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유사시 현장에서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봄.

또한, 유사한 입법례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³⁾은

2) 최주성·김정진 기자, '성수동 음악 공연 인파 몰려 취소...페기구 "기대했는데 속상"', 연합뉴스, 2024.7.28., <https://www.yna.co.kr/view/AKR20240728008051004?input=1195m>

이혜원 기자, '700여 명 몰린 성수 프라다 행사...인파 사고 우려로 조기 종료', 동아일보, 2024.10.25.,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1025/130294032/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로서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참여 예상 인원의 규모와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은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그 밖에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 또는 해당 기관의 소관 사항에 대한 역할 분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법 제66조의11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를 말한다.

1천명 이상의 관람객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의 경우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관할 소방관서 및 경찰관서 등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고 있으며, 안전관리를 위해 관할 경찰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다만, 경찰청은 경찰관서가 재해대처계획을 통보받더라도, 소관법령에 따라 안전점검이나 시정조치 명령 등의 권한이 부여되는 소방과 달리 안전상의 조치·명령을 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 개정 실효성이 미흡하므로, 재해대처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지자체의 점검 등 절차를 신설하는 등의 보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박정하 소위원장)

원안가결

-
1.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2. 축제장소나 축제에 사용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
 - 가.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 나.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
 - ③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개최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방관서 및 경찰관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6. 심사결과

원안의결

7.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

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 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후단 중 “관할 소방서장”을 “관할 소방서장과 관할 경찰서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1조제1항 전단(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재해예방조치) ① 공연장 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 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 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 장·군수·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u>관할 소방서장</u>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재해예방조치) ① ----- ----- ----- ----- ----- -----. ----- ----- ----- <u>관할 소방서</u> <u>장과 관할 경찰서장</u> -----. ② ~ ⑥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략)	